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535

발의연월일: 2021. 9. 13.

발 의 자:조응천·오영환·위성곤

김민기 • 문진석 • 김정호

이상헌 · 한준호 · 문정복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한정된 공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해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을 수립하고 각 국가에 이행을 권고·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가항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항공사, 공항운영자, 항공기상기관 등 항공교통 운영기관에 산재되어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항공교통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와 국가항행계획 이행 및 항공교통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가. "항공교통관리"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2 신설)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경제적·효율적 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정의
- 나. "항공교통데이터"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24호의3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독려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 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공기 비행정보 및 비행성능에 관한 정보, 비행계획 등 항공교통데이터에 관한 정의를 마련
-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등에 따라 국가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국가항행계획 (National Air Navigation Plan)을 법정계획화 하고, 국가항행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및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7조의2 및 제135조제8항제2호의2 신설)라. 항공교통의 지연·혼잡을 최소화하고 항공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한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 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권고하는 데이터 기반의 항공교통관리 및 항공교통의 안전하고 경제적·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등을위한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의3 신설)
- 바. 현행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일 시행)」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안 제89조제3항)
- 사. 항공교통데이터 수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데이터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 166조제8호의2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의4아목 중 "공항운영자"를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
 -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교환하는 자료
 - 나.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성능에 관한 자료
 - 다. 공역관리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 라.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른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수집·분석한 자료

- 마. 제67조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료
-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사용되는 자료
-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 자. 「항공사업법」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이하 "항 공기취급업자"라 한다)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관련된 자료
- 차.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와 항 행안전시설의 전력사용량 및 공항 소음에 관한 자료
- 카.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 타.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 파.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를 위하여 수집·활용하는 항공기 위치정보, 항공로 기상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제6장의 제목 중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관리"로 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 · 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경제성·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 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 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분석·평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한 시
 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기관 등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 · 저장 · 분석 절차
-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차
-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사항 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 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관계 행정기관
-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제135조제8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7조의2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제166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항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항행계 획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의3. (생략) 1. ~ 10의3. (현행과 같음) 10의4.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 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 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 of. -----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가 -----<u>공항운</u>영자(이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 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관리하는 자료 등 자. ~ 타. (현행과 같음) 자. ~ 타. (생 략) 10의5. ~ 24. (생략) 10의5. ~ 24. (현행과 같음)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 <신 설> 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 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 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

<신 설>

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 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 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교환하는 자료

<u>나. 비행정보구역을 비행하는</u> <u>항공기의 비행성능에 관한</u> 자료

 다. 공역관리 및 항공교통호

 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라.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른 데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수집 • 분석한 자료

마. 제67조에 따른 비행규칙 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 륙·착륙과 관련된 시설로 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사용되는 자료
-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 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 시설에서 생성·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 자. 「항공사업법」제2조제20 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이하 "항공기취급업자"라 한다)의 항공기에 대한 급 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시간과 관련된 자료
- 차.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 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와 항행안전시설의 전 력사용량 및 공항 소음에 관한 자료
- <u>카. 「항공사업법」 제18조에</u> <u>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u>

25. ~ 34. (생 략)제6장 <u>공역 및 항공교통업무</u> 등<신 설>

료

타.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파.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가 운항관리를 위하여 수 집・활용하는 항공기 위치 정보, 항공로 기상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5. ~ 34. (현행과 같음)

제6장 <u>항공교통관리</u> 등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
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
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
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

략

-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 • 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 •경제성•효율성 향상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 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 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 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 운영에 필 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u>3.</u> (생 략)

② (생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 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
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
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
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
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 영자,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 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 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

<신 설>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
・분석・평가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효 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 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분 석・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 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데이터시스템을 구축·운영하 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항공교통데 이터 관련 기관 등에 항공교통 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 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 ② (생략) <신 설>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 저 장ㆍ분석 절차
-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 과 분석결과 공유방법 및 절 차
-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 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 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관계 행정기관
 -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 또는 항공 지도의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 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조 ~ ⑦ (생 략)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2. (생략) <신설>
 - 3. 4. (생략)
-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 1. ~ 8. (생 략)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7
<u>정에 따른</u>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1
~ ⑦ (현행과 같음)	
8	
<u>.</u>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77조의2에 따른 국기	가항
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된	
지원 업무	
3.·4.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u>.</u>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	3조
의3제2항에 따른 항공교	

	이터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